

기업활력을 위한 법인세 개편 방향

- 법인세 이해를 중심으로 -

2019. 4. 23

이영환(계명대)

1. 서론

□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은 어떤 사회집단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

- 조세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조세를 부담하는 집단의 여론을 청취한 후, 가장 적합한 정책을 수립
- 조세와 관련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엉터리인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 즉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을 조사에 포함시킨다는 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불공정 여론조사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

□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소득증대)’라는 인기영합적인 구호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별다른 저항 없이 법인세가 인상되었음

-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법인세 인상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데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
- 사실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

- 여기서는 법인세의 정의, 올바른 국제지표 비교, 세부담의 귀착, 소득재분배 효과,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고,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

2. 법인세에 대한 이해

1) 법인세의 정의

□ 세금은 사람만이 부담할 수 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주인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인세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기업)이 세금을 낸다는 착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

□ 법인은 수입배분의 도관이다.

- 법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근로자와 자본소유주에게 배분하는 도관 (conduit)에 불과
 - 재화의 판매수입은 기여도에 따라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자기자본 수익인 당기순이익이 남게 되고,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부과
 - 당기순이익은 배당과 사내유보의 형태로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결국 법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결과물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와 자본소유주에게 모두 배분
- 법인의 소득은 생산과정에 기여한 형태(자본, 노동, 토지 등)에 따라 배분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도 함께 배분
 - 법인세 인상으로 최종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도 법인세를 함께 부담

□ 법인세는 부분요소세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세부담의 전가를 초래한다.

- 법인세는 요소소득 중에서도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부분요소세의 성격을 지님
 - 법인세는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급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수익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부분요소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법인세가 이윤세가 아닌 부분요소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부담을 주주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
 - 경제적 이윤에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기업이 전액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법인세는 일괄조세(lump-sum tax)처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음
 - 경제적 이윤이란 기회비용을 초과한 이윤으로 정의되며, 경제적 이윤(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는 가격과 생산에 대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¹⁾

-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대상(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이윤(기회비용)과 경제적 이윤(초과이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유주가 세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주주에 의해 조달된 자본의 비용(기회비용)은 현행 세법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 다른 비용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가 강화되면,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곳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비효율성과 세부담 전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준은 자본의 부문간 이동성, 생산요소의 대체가능성, 수요구조, 순수이익률에 대한 자본의 탄력성 등에 의해 결정

2) 법인세가 투자, 고용(소득)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신고전학파모형에 따르면 법인세는 우선, 자본 사용자 비용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 비용은 자본수요(투자)에 영향을 미쳐 자본스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침
- 투자자는 최소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기회비용)보다 커야 투자하기 때문에 사용자 비용은 이자율, 감가상각률, 각종 세부담률에 의해 결정²⁾

$$c = \frac{(r + \delta)(1 - k - \tau z)}{(1 - \tau)(1 - t)}$$

- 여기서 c 자본 단위당 사용자 비용, r 은 이자율, δ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k 는 투자세액공제율, z 는 자본재 단위당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τ 는 법인세율, t 는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의미
- 자본재의 사용자 비용은 투자세액공제율과 가속감가상각공제율(τz)이 클수록 감소하고, 법인세율과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클수록 증가
-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수요(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입증하려는 실증분석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사용자 비용을 우선 추정한 이후, 사용자 비용에 대한 투자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기존문헌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은 대략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 법인세율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
- Cummins and Hassett(1992)는 -1.1(장비) ~ -1.2(구축물), Auerbach and Hassett(1992) -0.67 ~ -0.84, Harhoff and Ramb(2001) -0.42, Dwenger(2014) -0.25 ~ -0.95, Hassett and Hubbard(2002) -1.0 등 신고전학파가 예상하는 사용자 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 -1.0에 근접

1) 따라서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는 경제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이윤이 자본가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 경제주체로의 세부담 전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효율성도 발생하지 않음

2) 모든 법인의 소득이 배당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한 경우

한다는데 학문적 합의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 법인세가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 기존의 351개 기존연구에 대한 De Mooij and Ederveen(2003)의 문헌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에 대한 외국인투자(FDI)의 준탄력성(semi-elasticity)은 -3.3에 달함⁴⁾
- De Mooij and Ederveen(2005)는 427개에 달하는 기존연구를 추정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법인세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준탄력성의 평균값을 추정하고 있는데,
- 시계열분석의 평균은 -2.61, 횡단면 분석의 평균은 -7.61, 패널분석의 평균은 2.73, 이산선택 분석(discrete choice model)의 평균은 -3.43에 달하고, 전체 평균은 3.72에 달함

□ 법인세가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율 인하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확대 → 다국적기업 소득(profit)의 해외 이전 축소 & 국내로의 송금 증가 → 국내소득 증가
- 법인세율 국제간 격차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에 대한 준탄력성을 추정한 기존 연구의 평균은 0.8~1.0에 달하고 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는 기존연구의 추정값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0.8에 달하고 있음
- 탄력성 0.8의 의미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이 10%p 인하될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8% 증가한다는 것임
- 조경엽(2016)은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율에 대한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25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364로 추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소득은 2.25% 증가하고, 외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은 1.364% 감소한다는 의미

3) 법인세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 (폐쇄경제) 생산요소의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로운 폐쇄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은 산출효과와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으로 세부담이 전가⁵⁾

3) CEA(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s" 참조

4) 준탄력성이 3.3이 의미하는 바는 법인세율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3.3% 감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산출효과는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와 생산이 감소하여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
 - 노동으로의 세부담 전가는 법인과 비법인 부문의 요소집약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법인부문이 자본(노동)집약적이면 노동(자본)보다 자본(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자본의 상대가격 r/w 가 하락(상승)하고 자본(노동)의 세부담 비중이 커짐
- 대체효과는 법인세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의미
 - 대체효과의 경우 탄력성에 따라 노동으로의 세부담 전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임금 대비 자본수익률 r/w 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의 세부담은 노동의 세부담보다 항상 높음
- 부분 간 이동이 자유로운 폐쇄경제하에서는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부분요소세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요소 간 상대가격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요구

□ (개방경제)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자본이 해외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제간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동으로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

- 법인세 인상 → 법인부문의 자본수익률 감소 → 자본 해외유출 → 국내 자본 저장 감소 → 국내 잔존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 → 자본의 상대가격 r/w 상승 →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 세부담은 대부분 노동으로 전가
-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으로 전가되기 쉬움
 -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국제 재화가격과 자본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자본시장과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수익률에 격차가 발생하면, 국내자본은 100% 해외로 유출되고 법인세 부담은 100% 노동으로 전가
 -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다면, 법인세 인상 → 자본의 해외 유출 증가 → 국제시장에서 자본공급 증가 → 국제 자본수익률 하락 → 자본 해외유출 감소 → 일정 부분 자본에 세부담 귀착
- 국내외 재화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대부분 세부담은 노동으로 전가되기 쉬움
 - 법인세 인상 → 국내재화의 상대가격 상승 → 국내외 재화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국내재화 수요 감소폭 증가 → 국내 생산 감소효과 증가 → 자본유출 증가 → 자본(노동)의 세부담 감소 (증가)
-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노동의 세부담이 증가
 - 법인세 인상 → 자본유출 증가하고 자본에 대한 수요 감소 →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5) Harberger(1962) 참조.

노동에 대한 수요도 함께 감소 → 임금하락 → 노동의 세부담 증가

○ 자본집약적인 법인이 많은 국가일수록 노동의 세부담이 증가

- 자본집약적일수록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의 유출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으로 전가되는 세부담도 커지게 됨⁶⁾

〈표 1〉 개방경제하의 경제주체별 법인세 부담 결정 요인 및 영향

	자본부담	노동부담
국제 간 자본의 이동성 증가	↓	↑
경제규모 확대	↑	↓
국내외 재화 간 대체성 증가	↓	↑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 감소	↓	↑
법인부문의 자본집약도 증가	↓	↑

자료: Gravelle(2010).

□ (실증분석) 법인세율의 노동 귀착율은 21%~75% (평균 57.6%)에 달함

- Southwood(2014)은 자본의 이동성과 요소 간·재화 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연구의 평균적인 법인세의 노동귀착률은 5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음
 -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Arulpalapam et al(2012) 50%, Desai et al (2007) 45~75%, Gravelle and Smetters(2006)⁷⁾ 21%~73%, Randolph(2006) 59%~70%.
 - Jensen and Mathur(2011)은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어지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법인세의 근로자의 부담비중은 50%를 넘고 있다고 결론
-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김승래(2006)는 소비 17%, 노동 8.5%, 자본 74.5%로 법인세 부담이 귀착되며, 조경엽(2015) 소비 30%, 노동 20%, 자본 50%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
 - 이들 모형은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 CGE 모형을 통해 법인세의 노동귀착률을 분석하고 있어 개방경제를 가정한 연구에 비해 노동귀착률을 낮게 추정하고 있음

6) 자본집약적인 법인부문에 법인세 인상 → 자본의 해외유출 증가 → 법인부문의 노동소득 베이스가 비법인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법인부문의 노동이 흡수해야 할 세부담 증가 → 법인부문의 임금하락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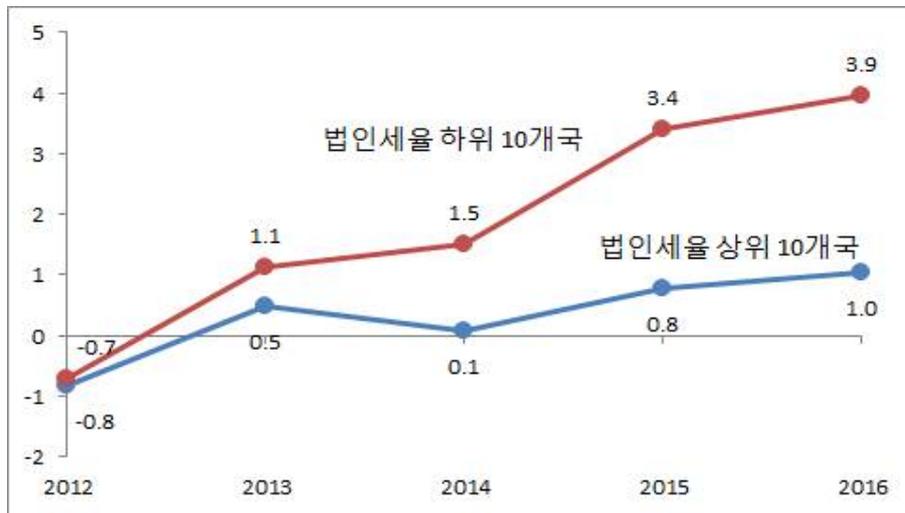
7)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전가 비중이 높아지는데 국제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으로의 전가 비중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실증분석) 법인세율의 임금탄력성 $-0.14 \sim -0.50$

-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높은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지난 5년간의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의 임금증가율이 확연히 높음
- 임금증가율 격차가 2013년에 0.6%p이던 것이 2016년에는 2.9%p까지 확대

<그림 1> 법인세율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평균 임금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주: 임금은 2016 불변가격(USD PPPs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는 노사협약(직접효과), 생산성 향상효과(간접효과), 법인세 부담의 노동으로의 전가(귀착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
- (직접효과) 법인세 인하 → 자본소득 증가 → 노사협상 → 임금 증가⁸⁾
- (간접효과) 법인세 인하 → 투자증가 → 자본장비율(자본/노동)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임금 증가
- 법인세율에 대한 임금탄력성은 Felix(2009) $-0.14 \sim -0.36$, Fuest et al.(2017) -0.14 ,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 $-0.15 \sim -0.24$, Hassett and Mathur(2015) -0.5 , Azemar and Hubbard(2015) -0.17 (미국) ~ -0.43 (OECD) 로 추정⁹⁾
- Azemar and Hubbard(2015)에 따르면, 법인세에 따른 임금변화는 3/4는 간접효과로 인해 발생하고 1/4은 직접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8) Arulampalan et al (2012) 참조

9) Felix(2009)는 미국 주정부(1977~2005), Fuest et al.(2017)은 독일 지방자치단체(1993~2012),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는 캐나다 자치구(1998~2013), Hassett and Mathur(2015)는 65개국, Azemar and Hubbard(2015)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법인세율을 35%였던 것을 21%로 인하하면, 가구당 연소득은 4,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4)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쟁

-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2가지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
 - ①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본장비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으로 자본이 감소한다면 고숙련 노동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② 이동성이 높을수록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데, 고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의 부담이 저·중숙련 노동자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짐
- Felix(2007)와 Fuest et al(2017)는 ①의 효과보다 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법인세율 인하는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킨다고 주장
- 이에 반해 Krugman(2017)와 Summer(2017)은 주식보유 형태, 주주의 의사결정행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의 영향으로 근로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미국 주식의 35%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상당부분이 외국투자자로 귀착
 - 법인세가 경영자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아니며, 법인세 인하로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면 제조업의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경엽 외(2015)는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경기침체에 저소득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법인세가 인상되면 자본이 개인 사업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소득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법인세의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

- OECD 국가 중 다단계 세율구조를 가진 국가는 9개국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다단계 과세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임¹⁰⁾

10) 다단계 과세체계를 가진 국가는 9개국이나 벨기에가 3단계를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벨기에는 법인세가 아닌 이윤세를 부과하고 있어 벨기에를 제외하면 8개국에 지나지 않음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000억 원 이상 과세소득에 25%의 세율구간을 신설하여 과세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였음
-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단일과세로 이미 전환하였으며, 벨기에가 3단계로 과세하고 있으나 벨기에는 법인세가 아닌 이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다단계 과세체계를 가진 나라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모두 2단계로 과세하고 있고, 기준금액이 헝가리 21.4억 원, 네덜란드 2.7억 원으로 1억 원을 초과하고 나머지는 1억 원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표 2〉 2단계 세율구조 국가들의 기준소득 및 세율

(단위: 자국화폐, 원, %, %p)

		프랑스 (중소)	일본 (중소)	캐나다 (중소)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기준 소득	자국화 폐	38,120	8,000,000	500,000	5억	15,000	200,000	15,000
	원화	5,000만 원	7,674만 원	4.7억 원	21.4억 원	1,995만 원	2.7억 원	1,995만 원
낮은 세율		15	19	11	10	20	20	17
높은 세율		33.3	25.5	15	19	21	25	23
세율 차		18.3	6.5	4.0	9.0	1.0	5.0	6.0

주: 1.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법인인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

자료: 김학수(2016)

- 기업규모에 따라 누진구조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주주는 가난하고, 대기업의 주주는 부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음
 - 중소기업일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누진구조를 강화할수록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은 약 20% 수준인 반면, 비상장주식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은 100%에 달함
 - 법인세 귀착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세는 소비자, 근로자로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부담을 대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

5)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효과

□ 법인세 인하로 야기되는 투자 증가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논쟁

- (법인세 인하 찬성)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국내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자본 순수출이 감소하여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파급효과가 유발
 - 법인세율 인하 →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

가 → 잠재성장률 증가

○ (법인세 인하 반대)

- 법인세 인하 → 재정적자 증가 → 국가채무증가 → 이자율 증가 → 투자와 자본유입의 상쇄효과(crowding effect) 발생
 - 그러나 상쇄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 기존 실증분석의 결과
- Krugman(2017)은 법인세 인하 → 자본유입 증가 → 환율상승 → 수출둔화 & 수입증가 → 무역수지 악화 → 고용감소라는 파급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¹¹⁾
 - Krugman(2017)은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근로소득은 약 2.5백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ppelbaum(2017)은 법인세 인하가 수출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무역수지 적자(호황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고 미국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조경엽(2017)은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함

- 한·미간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미국의 GDP는 연평균 2.7% 증가하고, 투자는 13.6%, 고용 81만 8천명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9.3% 확대될 전망
 - Krugman(2017)이 지적하였듯이 자본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
-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미국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하면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순유입 증가, 자본스톡이 증가하는 파급경로를 거치면서 GDP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반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출로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전망
 - 또한 법인세 인상은 임금과 고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부담이 노동자로 전가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감소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이 증가하고 송금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11) Krugman(2017)은 이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2.5백만 달러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3> 한·미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10년간 연평균 변화

(단위: %)

	한국 법인세율 인상 (22% → 25%)		미국 법인세율 인하 (35% → 21%)		한국 법인세율 인상 & 미국 법인세율 인하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GDP (%)	-1.3	0.01	-0.4	2.7	-1.7	2.7
투자 (%)	-4.1	0.04	-0.8	13.5	-4.9	13.6
임금 (%)	-0.2	0.00	-0.1	0.7	-0.3	0.7
고용 (천명)	-83.8	4.49	-21.7	813.4	-105.1	818.0
근로소득	-1.1	0.0	-0.3	1.9	-1.5	1.9
자본소득	-1.4	0.0	-0.5	4.7	-1.9	4.7
수출	-0.1	0.0	-0.4	0.1	-0.5	0.1
수입	-0.8	0.0	-0.3	2.8	-1.1	2.8
무역적자	-9.6	0.1	0.6	9.2	-8.9	9.3

3. 국제비교 및 동향

1) 법인세 인하 경쟁

□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

- 1985년에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61.8%에 달했으며, 세율이 가장 낮은 스위스의 세율도 31.9%에 달했음
 - OECD 평균이 47.5%였으므로 1980년대는 법인세가 재원조달의 핵심수단이었음
-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세율은 24.0%로 1985년에 비해 무려 23.5%p나 하락하였음
-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법인세를 재원확보의 수단보다는 자본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4〉 주요국의 법인세율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핀란드	61.8	44.5	25.0	29.0	26.0	26.0	20.0	20.0	20.0
스웨덴	56.6	53.0	28.0	28.0	28.0	26.3	22.0	22.0	22.0
독일	60.0	54.5	55.1	52.0	38.9	30.2	30.2	30.2	30.2
영국	40.0	34.0	33.0	30.0	30.0	28.0	20.0	20.0	19.0
한국	33.0	33.0	33.0	30.8	27.5	24.2	24.2	24.2	24.2
평균	47.5	40.7	35.7	32.7	28.3	25.8	25.2	24.9	24.5

□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화 시킬 전망

-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으로 다른 나라의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더욱 치열해 질 전망
 - 미국의 법인세 인하기로 중국의 투자가 5.8%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아세안 3.0%, EU 2.1%, 일본 1.6%의 순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
 - 투자 감소와 더불어 각국의 GDP가 감소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은 미미하나마 다른 국가의 투자와 GDP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배당에 대해 부과되던 원천징수 10%를 재투자 시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간 자본유치 경쟁 가시화되고 있음

〈표 5〉 주요국의 법인세율 추이

(단위: %)

	한국 법인세율 인상 (22% → 25%)		미국 법인세율 인하 (35% → 21%)		한국 법인세율 인상 & 미국 법인세율 인하	
	투자	GDP	투자	GDP	투자	GDP
한국	-4.09	-1.30	-0.80	-0.38	-4.87	-1.67
EU	0.06	0.02	-2.08	-0.73	-2.02	-0.71
미국	0.04	0.01	13.52	2.67	13.56	2.68
중국	0.17	0.04	-5.84	-1.58	-5.67	-1.54
일본	0.11	0.03	-1.60	-0.59	-1.49	-0.56
아세안	0.15	0.05	-2.96	-1.15	-2.81	-1.10
인도	0.04	0.01	-1.48	-0.51	-1.45	-0.49
호주	0.07	0.01	-0.42	0.02	-0.35	-0.24
러시아	0.04	0.02	-0.75	-0.49	-0.71	-0.47
기타OECD	0.04	0.01	-0.42	-0.44	-0.38	-0.43
기타	0.04	0.01	-1.85	-0.61	-1.81	-0.59

자료: 조경엽(2017),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 국제비교지표

(가) 실효세율(ETR)

□ 법인세율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한국의 실효세율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고, 미국이 대규모 감세를 하더라도 미국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높아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 없을 거라는 주장을 제기

□ 실효세율은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 부적합

○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나누어 추정되므로 법정세율에 반영되지 않는 조세지출 항목을 반영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정의, 운영방식, 포함 항목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소득(분모)과 세부담(분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국제비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지표수립이 어려움¹²⁾

- 추정기관마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고, 국가별 조세체계의 차이로 분모와 분자에 포함되는 항목이 상이하여 국제비교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미국의 회계감사원(GAO)과 재무부는 분모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분자에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고, 의회예산처(CBO)와 의회조사처(CRS) 등은 국내소득만 포함하여 추정

○ (국제비교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 부재) 국세청 신고자료, 기업데이터, 국민계정 등이 사용되나 세세항목이 달라서 국가마다 분모와 분자에 포함되는 항목에 차이가 발생

- 과세당국의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국가마다 과세체계와 조세지출항목이 달라 일관성 있는 비교 지표를 구축하기 힘들

- 기업 회계자료를 이용할 경우는 기업마다 회계 작성방법이 다르고,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국가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님

○ (기타) 이월결손금, 부실채권 비용, 감가상각 포함 여부 등의 소득 항목(분모)과 해외납부세액, 지방세납부액 포함 여부 등의 세부담 항목(분자) 항목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음

□ 과세당국의 소득신고를 이용한 한국의 실효세율도 추정기관에 따라 최고

12) 기준조세체계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함. 국가별 조세체계의 차이, 운영방식, 추정기법의 차이로 조세지출 항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 항목도 자연스럽게 국가마다 달라짐. 이와 같이 국가마다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별 실효세율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4.6%p나 차이가 발생

<표 6> 계산방법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

	금액 (백만 원)	비고
소득금액 (1)	249,470.0	글로벌 과세체계: 국내소득 + 해외소득
이월결손 및 기타 소득공제 (2)	27,644.7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선박표준이익 등은 조세지출 항목이 아닌 기준조세체계 항목으로 분류
과세표준 (3) = (1)-(2)	221,825.4	기준조세체계인 이월결손금 제외한 과세소득
국세 + 외국 납부세액 (4)	38,229.7	
외국납부세액 (5)	2,785.6	
국세납부세액 (6) = (4)-(5)	35,444.0	
지방세 납부세액 (7) = (6)*0.1	3,544.4	
총부담세액(8) = (5) + (6) + (7)	41,774.0	기업의 실질부담액
국회예산정책처 (9) = (6)/(1)	14.2	$\frac{\text{국내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기획재정부 (10) = (4)/(3)	17.2	$\frac{\text{국내납부세액} + \text{해외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 \text{이월결손금}}$
한경연 (11) = (8)/(3)	18.8	$\frac{\text{국내납부세액} + \text{해외납부세액} + \text{지방납부세액}}{(\text{국내소득} + \text{해외소득}) - \text{이월결손금}}$

자료: 2015 국제통계연보, 법인세 신고 현황. 조경엽(2016),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서 재인용.

□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할 경우, 기업별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과 법인세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내역이 기업마다 상이하여 국제비교로 부적합
 - 기업에 따라 미국기준(US Accounting Standard) 또는 국제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을 적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어 데이터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기업별 세부담과 소득을 합하여 추정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별 실질부담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님
- 기업별 실효세율은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간 소득을 이전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인세부담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더욱이 세부담은 국내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이라기 보다는 자본관련 실효세율로 해석해야 함¹³⁾

13) 기업회계자료에 나타난 납부세액에는 국세, 지방세, 해외납부세액, 자본재 구매에 대한 소비세, 자산양도세, 재산세, 프랜차이즈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

	EBT 기준				EBTDA 기준				Obs
	2008	2015	2008년~2015년		2008	2015	2008년~2015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호 주	29.4	25.3	26.7	12	21.3	15.8	16.9	12	125
오 스트 리 아	22.7	22.4	21.7	22	14.1	14.2	13.1	22	35
벨 기 에	21.3	21.4	20.0	26	12.3	14.0	12.8	23	33
캐 나 다	18.6	20.2	18.8	28	10.1	11.9	11.2	29	190
칠 레	21.5	30.2	23.4	19	13.7	17.3	15.5	14	124
체 코	21.8	22.6	20.6	25	15.0	9.8	12.2	24	7
덴 마 크*	23.2	24.7	29.0	7	12.6	20.8	19.5	4	40
에 스토 니 아	16.5	23.3	16.0	31	7.9	8.1	8.6	32	4
핀 란 드	25.3	19.2	22.2	21	17.2	16.7	17.2	9	44
프 랑 스	33.7	24.7	29.9	5	18.9	12.4	17.1	10	229
독 일	30.9	26.2	27.5	10	18.1	18.4	17.9	8	217
그 리 스	27.1	32.5	29.9	4	16.0	15.7	15.4	17	34
헝 가 리	4.8	10.2	4.8	33	3.8	6.0	3.2	33	2
아 이 슬 란 드	25.5	25.4	25.3	14	13.7	18.8	17.0	11	1
아 일 란 드	22.1	22.9	20.8	24	16.0	14.7	15.1	19	23
이 스 라 엘	16.5	22.4	19.6	27	9.4	11.9	10.9	30	92
이 탈 리 아	31.4	30.9	32.7	3	18.2	18.5	18.8	6	80
일 본	40.5	34.8	38.0	1	21.9	21.7	21.9	3	1244
한 국	23.5	23.8	22.9	20	12.1	13.9	14.5	20	3147
룩셈부르크	25.7	28.0	25.5	13	15.1	15.7	15.4	15	21
멕시코	25.3	35.1	29.7	6	17.7	16.2	18.3	7	47
네덜란드	40.8	21.6	34.3	2	32.1	7.6	23.9	2	55
뉴질랜드	27.7	23.3	27.3	11	14.1	14.3	14.4	21	32
노르웨이*	29.9	17.6	27.6	9	20.4	21.6	25.2	1	46
폴란드	19.0	19.1	16.8	30	13.8	12.2	11.7	25	100
포르투갈	22.6	24.5	23.8	16	10.8	11.4	11.5	27	19
슬로베니아	24.2	12.9	18.0	29	14.5	8.5	11.4	28	6
스페인	26.5	27.2	23.5	17	14.1	11.4	11.5	26	64
스웨덴	24.5	23.1	23.5	18	17.1	14.5	15.4	16	126
스위스	22.4	23.1	21.5	23	16.0	15.1	15.1	18	120
터키	21.0	9.0	11.9	32	15.2	6.7	8.9	31	51
영국	25.9	22.0	24.7	15	18.2	15.5	16.6	13	279
미국	29.8	27.7	28.6	8	20.3	18.1	19.4	5	1229
평균	24.9	23.5	23.8		15.5	14.2	15.1		

주 : EBT: 세전소득, EBTDA: 세금,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전 소득
 자료: S&P Capital IQ를 이용하여 추정함. 조경엽(2016)에서 재인용.

- 기업의 과세소득에 감가상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세전소득(EBT) 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전의 소득(EBDAT)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있음
- o 내용연수를 두고 공제할 경우 자본재비용은 과소 계산되고, 과세소득은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 감가상각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함

- <표 7>은 S&P의 Capital IQ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에 위치한 모회사를 기준으로 추정된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2015년에 EBT를 기준으로 23.8%, EBTDA 기준으로 13.9%로 추정되어 OECD 국가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법정 법인세율 12.5%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지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모회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실효세율은 22.9%로 OECD 국가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음
 - 아일랜드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회계장부를 보면 소득에는 국내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납부세액에도 국내 납부세액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아일랜드의 실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자국내 부담과 해외부담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한계실효세율(METR)

□ 한계실효세율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한 단위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율로 정의

- Chen and Mintz(2008)은 King and Fullerton(1984)의 한계실효세율 공식에 자본관련 세금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METR을 추정하고 있음
 - 자본 유형 j 별 METR은 기업이 요구하는 세전 수익률 R_i^g 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자본의 사용자 비용) R_i^n 간의 차이가 R_i^g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

$$METR_i = (R_i^g - R_i^n) / R_i^g$$

- Chen and Mintz(1993)은 감가상각형 자본, 재고, 토지로 나누어 MERT를 추정하고 있는데, 기계 장비 등 감가상각의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¹⁴⁾

$$R^n = \beta i(1 - t_s) + (1 - \beta)\rho - \pi$$

$$R^g = \frac{(1 + t_m)(R^n + \delta)(1 - k)[1 - A + \tau(1 - t^s) / (\alpha + R^n + \pi)]}{[(1 - t_s)(1 - t_p - t_g)]} - \delta$$

14) Chen and Mintz(2008)은 재고의 수익률은 $R^g = (1 + t_m)(R^n + t_s \pi \zeta) / [(1 - t_s)(1 - t_g)] + \tau$ 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수익률은 $R^g = R^n(1 + t_m)[1 + \tau(1 - t_s) / (R^n + \pi)] / [(1 - t_s)(1 - t_p - t_g)]$ 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ζ 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선입선출법(FIFO)인 경우 1, 후입선출법(LIFO)인 경우 0, 두 가지가 병행될 경우 0.5로 정의

- 여기서 β 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i 는 부채비용(타인자본 수익률), t_s 법정 법인세율, ρ 주식비용(자기자본 수익률), π 인플레이션, t_m 거래관련 세율(양도세율, 수입관세, 자본재에 대한 소비세), δ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k 투자세액공제율, A 는 투자세액공제액의 현재가치, τ 은 자본세율(capital tax rate), α 은 감가상각율, t_p 는 자산세율(property tax rate), t_g 는 총수입세율(gross receipts tax rate)을 의미함
- 이와 같이 MERT를 추정하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ERT가 법정세율보다 높게 추정됨

□ <표 8>은 Chen and Mintz(2015)가 추정한 한계실효세율과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 한계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의 수익률은 낮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한계실효세율은 2005년에 32.8%이던 것이 2014년에 30.1%로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2005년에 6위에서 3위로 상승했음¹⁵⁾
 - 캐나다의 한계실효세율은 2005년에 38.8%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나, 2014년에는 19%로 순위가 14위로 크게 하락하여 투자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탈리아와 독일도 2005년에 4위와 5위에서 2014년에 8위와 9위로 순위가 하락한 국가로 꼽히고 있음
- Chen and Mintz(2015)을 이용하여 국제 비교를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부채비율과 물가로 조정된 이자율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고 자본 유형을 장비(equipment), 건축물(structure), 재고(inventory), 토지로 나누어 반영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을 반영하지 않아 MERT가 과대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 Gravelle(2014)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MERT를 반영할 경우 Chen and Mintz(2015)가 추정한 미국의 2010년 MERT는 34.6%에서 28.7%로 하락함¹⁶⁾

15) Chen and Mintz(2015)은 현재 한국에서 세제개편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납부세액 공제 축소 등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음

16) Gravelle(2014)에 따르면 무형자산에 대한 미국의 MERT는 -4.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표 8〉 Chen and Mintz의 한계실효세율 (%)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France	35.4	36.0	3	1	0.6
U.S.	35.9	35.3	2	2	-0.6
S. Korea	32.8	30.1	6	3	-2.7
Japan	31.5	29.3	7	4	-2.2
Austria	26.2	26.2	10	5	0.0
Spain	30.4	26.0	8	6	-4.4
Australia	25.9	25.9	11	7	0.0
Italy	33.5	24.5	5	8	-9.0
Germany	34.0	24.4	4	9	-9.6
U.K.	30.0	23.7	9	10	-6.3
Norway	24.4	23.5	12	11	-0.9
Portugal	19.6	22.8	20	12	3.2
New Zealand	20.5	21.6	17	13	1.1
Canada	38.8	19.0	1	14	-19.8
Denmark	21.6	18.6	15	15	-3.0
Belgium	23.6	18.5	13	16	-5.1
Switzerland	18.0	17.5	23	17	-0.5
Mexico	17.4	17.4	27	18	0.0
Luxembourg	19.8	17.2	19	19	-2.6
Estonia	20.2	17.1	18	20	-3.1
Netherlands	22.3	17.1	14	20	-5.2
Israel	19.5	16.1	21	22	-3.4
Hungary	14.7	16.1	29	22	1.4
Sweden	20.9	16.1	16	22	-4.8
Slovak	12.7	14.9	31	25	2.2
Poland	14.6	14.6	30	26	0.0
Finland	18.6	14.2	22	27	-4.4
Greece	17.5	14.2	26	27	-3.3
Iceland	18.0	14.2	23	27	-3.8
Czech	18.0	12.7	23	30	-5.3
Ireland	10.2	10.2	33	31	0.0
Slovenia	15.2	9.8	28	32	-5.4
Chile	7.3	8.1	34	33	0.8
Turkey	10.9	5.7	32	34	-5.2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and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에서 재인용.

주: 가중평균은 실질 GDP로 가중된 평균값을 의미함

(다) 기타 국제비교 지표

□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 GDP 대비 또는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국제비교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지표구축이 쉽고 단순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국제비교를 위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 분모에 GDP가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법인세수 비중이 올라가고 호황기에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을 지님
-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 국가의 법인세 의존도와 세제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유용한 지표로 평가
 - 법인세는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큰 세목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인세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제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4년 현재 3.2%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어, GDP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4년 현재 12.8%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총세수입의 법인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

<표 9> GDP와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

	GDP 대비					총세수입 대비				
	GDP대비		순위		변화 (%p)	GDP대비		순위		변화 (%p)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호 주	5.8	4.9	4	2	-0.9	19.2	18.0	2	2	-1.2
오 스트 리 아	2.2	2.1	25	21	-0.1	5.3	5.0	29	26	-0.3
벨 기 에	3.2	3.2	15	7	0.0	7.3	7.1	21	17	-0.2
캐 나 다	3.4	3.1	12	10	-0.3	10.4	9.9	11	10	-0.5
체 코	4.2	3.6	5	6	-0.6	12.1	10.8	7	7	-1.3
덴 마 크	3.4	2.7	12	16	-0.7	7.1	5.3	23	24	-1.8
에 스토 니 아	1.4	1.8	32	27	0.4	4.7	5.4	32	23	0.7
핀 란 드	3.2	1.9	15	24	-1.3	7.6	4.4	19	28	-3.2
프 랑 스	2.4	2.0	24	22	-0.4	5.5	4.5	28	27	-1.0
독 일	1.7	1.5	30	29	-0.2	5.1	4.2	30	29	-0.9
그 리 스	3.2	1.3	15	32	-1.9	10.3	3.9	12	30	-6.4
헝 가 리	2.1	1.5	27	29	-0.6	5.7	3.9	27	30	-1.8
아 이 슬 란 드	1.9	3.0	29	11	1.1	4.9	7.7	31	15	2.8
아 일 랜 드	3.3	2.5	14	19	-0.8	11.1	8.3	8	14	-2.8
이 스 라 엘	3.5	3.2	10	7	-0.3	10.2	10.3	13	9	0.1
이 탈 리 아	2.7	2.8	20	14	0.1	6.8	6.3	25	19	-0.5
일 본	4.2	4.0	5	5	-0.2	15.5	13.2	5	4	-2.3
한 국	3.6	3.2	8	7	-0.4	15.9	12.8	4	5	-3.1
룩셈부르크	5.9	4.3	3	4	-1.6	15.4	11.4	6	6	-4.0

네덜란드	3.6	1.9	8	24	-1.7	9.8	5.2	14	25	-4.6
뉴질랜드	6.0	4.4	2	3	-1.6	16.8	13.7	3	3	-3.1
노르웨이	11.5	7.1	1	1	-4.4	27.0	18.2	1	1	-8.8
폴란드	2.1	1.8	27	27	-0.3	6.4	5.5	26	22	-0.9
포르투갈	2.7	3.0	20	11	0.3	8.7	8.6	16	12	-0.1
슬로바키아	2.7	3.0	20	11	0.3	8.6	9.8	17	11	1.2
슬로베니아	2.7	1.4	20	31	-1.3	7.2	3.9	22	30	-3.3
스페인	3.8	2.0	7	22	-1.8	10.7	5.9	10	21	-4.8
스웨덴	3.5	2.6	10	17	-0.9	7.5	6.1	20	20	-1.4
스위스	2.2	2.8	25	14	0.6	8.4	10.5	18	8	2.1
터키	1.7	1.9	30	24	0.2	7.1	6.4	23	18	-0.7
영국	3.2	2.5	15	19	-0.7	9.3	7.5	15	16	-1.8
미국	2.9	2.6	19	17	-0.3	11.0	8.5	9	13	-2.5
OECD 평균	3.4	2.8	-	-	-0.6	10.0	8.2	-	-	-1.8

주: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체코와 멕시코는 제외되었으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의 경우 호주,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는 2013년 자료이며, 총세수입대비 법인세수 비중의 경우 호주,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 일본, 미국은 2013년 자료임.

자료: OECD Stat.

□ Paying Taxes 지표

- Paying Taxes 지표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의 11개 지표 중 하나로 국가별 기업체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음
 - World Bank는 189개국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률, 세목수, 납세준응시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납세의무의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별 Paying Taxes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표 10>에서 보듯이 법인소득세가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정되는 실효세율은 2005년에 비해 0.1%p 하락하는데 그쳐 순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표 10〉 Paying Taxes에서 제공하는 실효 법인소득세율 (%)

	실효세율 (% of profit taxes of commercial profit)		순위		변화
	2005	2014	2008	2014	
Australia	26.9	26.0	7	4	-0.9
Austria	15.1	16.8	22	17	1.7
Belgium	5.4	8.4	34	30	3.0
Canada	26.0	3.9	8	33	-22.1
Chile	18.3	22.3	15	9	4.0
Czech Republic	5.9	9.5	33	27	3.6
Denmark	28.0	18.7	4	14	-9.3
Estonia	9.3	8.4	27	30	-0.9
Finland	17.0	11.8	17	24	-5.2
France	8.3	0.5	31	34	-7.8
Germany	21.6	23.2	13	8	1.6
Greece	15.1	19.7	22	11	4.6
Hungary	7.9	11.8	32	24	3.9
Iceland	8.4	9.1	29	29	0.7
Ireland	14.2	12.4	25	23	-1.8
Israel	27.7	23.6	5	6	-4.1
Italy	30.8	19.5	3	12	-11.3
Japan	33.2	28.9	1	2	-4.3
Korea	18.3	18.2	15	15	-0.1
Luxembourg	16.7	4.2	18	32	-12.5
Mexico	22.4	25.4	12	5	3.0
Netherlands	26.0	20.4	8	10	-5.6
New Zealand	32.1	30.0	2	1	-2.1
Norway	24.9	23.6	10	6	-1.3
Poland	12.7	14.5	26	18	1.8
Portugal	15.2	13.6	21	19	-1.6
Slovak Republic	9.0	10.5	28	26	1.5
Slovenia	14.3	12.7	24	22	-1.6
Spain	24.2	13.3	11	20	-10.9
Sweden	16.5	13.1	19	21	-3.4
Switzerland	8.4	9.3	29	28	0.9
Turkey	15.9	17.9	20	16	2.0
United Kingdom	21.3	19.2	14	13	-2.1
United States	27.3	28.1	6	3	0.8
OECD평균	18.4	16.1			-2.2

자료: World Bank는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효세율, 납세준용시간, 복잡성을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189개국 중 OECD국가에 국한하여 실효세율만 추출하여 순위를 따로 설정하였음. 2005년의 실효세율은 'Paying Taxes 2008'로부터 추출했으며, 2014년의 실효세율은 'Paying Taxes 2016'으로부터 추출하였음.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ITC) Index

- ITC는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재산세 등의 효율성 점수와 순위를 평가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에서 소비세는 3위를 차지한 반면 재산세는 30위, 국제조세는 31위, 법인세는 15위를 차지하고 있어 종합순위는 13위를 기록하고 있음
 - 법인세의 평가항목은 크게 법정최고세율, 비용회복(cost recovery), 조세유인 및 복잡성으로 나누어짐
 - 비용회복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연도와 인정비율, 재고평가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음.
 - 조세유인 및 복잡성은 Patent Box 제도의 유무, R&D 세액공제 유무, 법인세 납부 시간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큰 분야에 속함
 - 우리나라의 효율점수는 64.2%로 평가되고 있어 최고 점수를 받은 에스토니아와 비교하면 35.8%의 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¹⁷⁾

<표 11> 법인세의 ITC 지표

	종합(overall)		법정 최고세율		비용회복 (cost recovery)		유인 및 복잡성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순위	효율점수
Australia	26	53.8	28	45.5	14	49	12	77.4
Austria	19	62.7	18	61.1	12	51.8	17	72.1
Belgium	29	48.9	32	33.1	2	65.8	28	61.9
Canada	23	57.9	21	57.1	28	41.3	11	79.4
Chile	10	68.2	15	68.9	30	40.1	6	91.6
Czech	7	71.6	3	79.8	15	49	21	68.8
Denmark	13	65.3	16	65.8	18	47.9	13	77.1
Estonia	1	100	6	76.7	1	100	3	93.8
Finland	4	74.1	6	76.7	32	39.2	2	97.1
France	31	43.8	33	31.7	9	53.1	25	66
Germany	24	56.7	30	45	8	53.2	8	82.1
Greece	20	60.8	20	58	23	43.9	7	83.3
Hungary	11	66.9	3	79.8	31	40.1	24	66.3
Iceland	12	65.6	6	76.7	29	41.3	23	66.5
Ireland	2	85.9	1	100	22	45.9	9	80.5
Israel	25	54.2	22	56.4	4	56.4	31	47.2
Italy	28	51.1	24	53.3	5	56.1	32	43.6
Japan	33	33.6	31	39	27	41.8	33	35.1
Korea	15	64.2	17	63.6	7	55.1	22	67.5

17) 효율점수는 DTF(distance to frontier)기법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산가능곡선을 추정하고 생산가능곡선상에 놓인 국가에게 가장 높은 효율점수(100)을 부여하고 생산가능곡선과의 거리로 비효율성을 측정함

Luxembourg	21	59.9	14	69	3	61.7	34	33.9
Mexico	30	46.6	28	45.5	21	46	29	58.5
Netherlands	16	64	18	61.1	11	52.1	14	76.1
New Zealand	22	59.5	25	51.8	25	42.7	4	93
Norway	18	63.2	23	54.9	26	41.9	1	100
Poland	9	69	3	79.8	24	43	20	69
Portugal	27	52.2	27	47.1	17	48	18	70.9
Slovak	17	63.4	12	70.4	10	52.2	30	55.8
Slovenia	3	76.6	2	86	20	47	15	76
Spain	32	41.8	25	51.8	34	23.7	26	63
Sweden	6	73.8	12	70.4	13	50.5	5	91.8
Switzerland	5	73.8	11	73.1	6	55.3	10	79.9
Turkey	8	69.9	6	76.7	16	48.5	19	70
United Kingdom	14	64.9	6	76.7	33	33.3	16	75.6
United States	34	31.4	34	17.5	19	47.1	27	62.2

자료: '2015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의 Table 3에서 재인용.

□ 회귀분석을 통한 정상수준 지표

- 법인세의 정상수준이란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의됨
 - 정상수준을 추정할 때 종속변수로 법정세율 또는 GDP 대비 법인세부담 비중이 사용되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경제, 사회, 정치적 변수 등이 사용됨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정상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치와 비교하여 법인세 부담의 높고 낮음을 평가함
 - <표 11>은 유진성·황상현(2015)이 추정한 법인세 부담의 정상치와 실제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상치 대비 실제치가 105.7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치보다 실제치가 5.7%p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정상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인세율 24.2%에서 1.3%p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임
 -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도 우리나라는 정상치(100)보다 실제치가 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OECD 기준 분석결과 주요국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 (2012년)

	명목 최고법인세율			법인세부담률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x100	실제치 (A)	정상치 (B)	비교지표 (A)/(B)x100
스웨덴	26.3	23.5	111.8	2.6	2.9	89.7
미국	40.0	36.3	110.2	2.5	2.5	98.2
호주	30.0	27.4	109.5	5.2	5.5	95.4
노르웨이	28.0	26.0	107.9	10.5	10.2	103.0
한국	24.2	22.9	105.7	3.7	2.8	131.5
프랑스	33.3	31.7	105.0	2.5	2.5	100.3
일본	38.0	37.4	101.6	3.7	3.8	98.5
덴마크	25.0	25.3	98.9	3.0	3.0	100.1
이탈리아	31.4	32.0	98.2	2.8	2.6	107.6
뉴질랜드	28.0	28.6	98.1	4.7	4.2	112.1
영국	26.0	26.9	96.8	2.7	2.9	92.9
네덜란드	25.0	25.9	96.7	1.9	2.4	78.6
독일	29.5	30.7	95.9	1.8	1.4	126.1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저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의 <표 7>에서 재인용.

3)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글로벌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 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에는 개별사간 거래가격 조정(transfer price), 저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 부채 조정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회피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왔음
- 최근에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과세요건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전 세계 온라인쇼핑 규모는 현재 2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 광고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TV 광고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포함하면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
 - 디지털 시장의 대부분을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이들의 조세회피 전략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지 상품 보관 및 배송 목적으로 창고를 두고 인터넷 거래를 통해 세원 잠식행위 증가
 - 이전가격 지침 남용: 특허, 상표 등 무형자산 또는 개발 완료 직전의 무형자산을 저세율 소재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모회사가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

- 조세조약 남용: 국가간 조세 조약망이 확대되고 조세피난처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제 3국에 피이 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중비과세 또는 이중감면의 혜택을 받는 조세남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혼성불일치 거래 확대: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란 동일한 실체이지만 국가 간 세법상 차이로 상이한 거래로 간주되면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이중공제 등의 세원잠식 형태를 의미함
 - B국 소재 자회사가 A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A 국은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B국은 부채로 간주한다면 혼성불일치에 대한 세원잠식이 발생
-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자본보다는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로 자본시장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만 세부담이 감소하여 사회전체의 통합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OECD(2015)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 ~ 2400억 달러(총 법인세수입의 4%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이윤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 2012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으며, OECD가 주도하여 작성한 15가지 세부보고서를 '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음
- BEPS 이행 프로그램은 1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투명성 확보 방안 등 3가지 분야(fundamental pillars)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행 강제력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모범 관행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세부과제 중에 합의가 종료된 부분도 있고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조만간 다국적 기업의 BEPS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동노력이 현실화될 전망

<표 13> BEPS Action별 과세권 변화

구분(강제성 정도)	권고내용(Action 번호)	예상 효과
최소기준(강함)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5)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국가별 보고서 제출(13) - 분쟁해결장치 개정(14)	- 경유국과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기존지침의 개정(강함)	- 모델조약 고정사업장 개념(7) - 이전가격과세지침(8~10)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공통접근(중간)	- 혼성불일치 해소(2) - 이자비용공제 제한(4)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모범관행(약함)	- CFC 규정(3)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보고의무 규정(12) - 분쟁해결장치 개선(14)	- 거주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 보호

자료: 안종석(2016)에서 재인용

- OECD 회원국들은 소득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에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비교대상 거래가 없고, 관련된 주체들의 기여도,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음
 - 우리의 법인세율을 국제수준으로 낮춰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국내로 송금을 지연하려는 유인 자체를 줄이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함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가 존재하는 한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면 실질적인 경제행위까지 위축될 수 있음

4. 세제개편 방향

1) 향후 연구과제

- 법인세를 이윤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윤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 이윤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되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이윤세가 현실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적은 이유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임¹⁸⁾
 - 수익률이 높은 것이 초과이윤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인지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 정부가 정상이윤의 준거를 잘 못 제시할 때 이윤세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기업이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이윤세가 법인세보다 높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윤세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세수확보를 위한 최적의 이윤세율은 100%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상이윤을 설정하는 준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윤세율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초과이윤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윤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이윤세를 오용할 경우 현재 법인세 논쟁보다 더 큰 좌우논쟁을 야기할 수 있음

- 외국의 실증분석에 비해 국내연구는 다양성 측면과 양적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법인세의 특성과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연구가 요구됨
 - 글로벌 경제로 범위 확대하고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비법인, 독과점기업과 경쟁기업, 자본조달 방식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동으로의 귀착률은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노동의 행태(정규직과 비정규직 숙련과 비숙련 등)를 다양화하고, 임금결정원리(노조협약, 최저임금, 효율임금 등)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요구됨
 - 계량분석은 글로벌 기업데이터, 국제간 횡단면 거시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기업별(다국

18) 이윤세를 도입한 나라는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임.

적 기업, 국내기업) 특성, 국가별 특성 등을 반영한 연구 필요

- 계량분석에 있어서도 노동의 행태(정규직과 비정규직 숙련과 비숙련 등)를 다양화하고, 임금결정원리(노조협약, 최저임금, 효율임금 등)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요구됨
- 국가수준의 데이터 또는 기업데이터(Capital IQ, Amadeus 등)를 이용한 법인세율에 대한 투자, FDI, 소득이전, 임금 탄력성 추정

□ 제도개선 과제

-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규모 추정 및 영토주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이전 효과 및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
- BEPS 시행에 따른 우리의 다국적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법인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 정비,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등에 대한 연구

2) 세제개편 방향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입을 구조개혁할 필요

- 선진국처럼 조세정책은 형평보다는 효율 우선원칙을 견지할 필요
- 개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세입구조를 구축
 - 자본과세의 비중이 높고, 소비세 비중이 낮아 국가경쟁력 약화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큼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

- 법인세율의 인하와 과세단계를 축소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소한 미국보다는 낮아야 자본유출을 방지
- 고용주지원제도를 축소하고 EITC를 확대
 - EITC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유인을 확대
 -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고, 세원을 축소하는 고용주지원제도를 축소

□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세제 폐지

- 최저한세제 폐지

- 최저한세제 도입한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미국뿐임
- 미국은 최근 법인세의 최저한세를 폐지
- 비과세 기업과 과세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면 최저한세를 인하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 법인세율 인상 대신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영구적으로 정착

□ 상속세 세율 인하

- 경영권 보호를 어렵게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속세 세율 인하
 -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고 전제하는 상속세, 국민을 범법자로 간주
 - 상속세 세율이 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55% > 40%), 한국(50% > 42%), 헝가리(18% > 16%) 3개국뿐임
 - 상속세 세율이 10% 이상 11개국, 10% 이하 9개국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한 나라 15개국

참고문헌

- 김승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2),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 , 「20대 총선공약의 검토와 평가」, 서울시립대, 2016.
- 김학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논의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 곽태원,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안종석,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OS 관련 자문 회의, 2016.
- 이영·전영준·이철인·김진영 편역, 「Rosen의 재정학」, H. S. Rosen and T. Gayer 공저, Eight Edition, 2007.
- 이영·조명환,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 유진성·황상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조경엽,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KERI 정책제언 15-10, 한국경제연구원, 2015.
- ,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6-13, 한국경제연구원, 2016.
- ,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KERI Brief 2016.
- , 「법인세 오해와 진실」, KERI Insight 2016.
- ,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6.
- ,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KERI Brief 2017.
- 조경엽·황상현·우광호,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
- 황상현·설윤,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
- Arulampalam, W., Devereux, M. P., and Maffini, Giorgia. 2012. “The Direct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on Wages.”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038-1054.
- Auerbach, A. and Hassett, K. A. 1992.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7: 141-170.
- Azémar, C. and Hubbard, G.R. 2015. “Country Characteristics and the Incidence of Capital Income Taxation on Wages: An Empirical Assess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8(5): 1762-1802.
- CEA, 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

-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ober, 2017.
- Chen D. and J. Mintz,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 A Proposed Business Tax Reform Agenda", University of Calgary, 2015.
- Cummins, J. G. and Hassett, K. A. 1992. "The Effects of Taxation on Investment: New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 243-252.
- Desai et 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Domestic Capital Stock", Ross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No. 1023, 2005.
- Desai, M., Foley, C. F., and Hines, J. R. 2007, December.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 In *Conference on Who Pays the Corporate Tax in an Open Economy*.
-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3.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ynthesis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 673-693.
-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5. "Explaining the Variation in Empirical Estimates of Tax Elasticit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2005-108/3.
- Dhammika Dharmapala, "What Do We Know Abou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014.
- Dwenger, N. 2014. "User Cost of Capital Revisited." *Economica* 81: 161-186.
- Ebrahimi, P., and Vaillancourt, F. 2016.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and Payroll Taxes on the Wages of Canadian Workers." Fraser Institute.
- Felix, R. A. 2009. "Do State corporate income taxes reduce wages?" *Economic Review-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94(2), 77.
- Fuest, C., Peichl, A., and Siegloch, S. 2017. "Do Higher Corporate Taxes Reduce Wages? Micro Evidence from Germany." *Americ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Ghosh and Wang, "Does FDI Accelerate Economic Growth?", *The OECD Experience Based on Panel Data Estimates for the Period 1980-2004*, *GLOBAL ECONOMY JOURNAL* No. 4, 2009.
- Gravelle, J. C. "Corporate Tax Incidence: Review of General Equilibrium Estimates and Analysis", Working Paper 2010-0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0.
- Gravelle, Jane G. and Kent A. Smetters, "Does the Open Economy Assumption Really Mean That Labor Bears the Burden of a Capital Income Tax?", *Advance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ol. 6, No. 1, Article 3, 2006.
- Harhoff, D. and Ramb, F. 2001. "Investment and taxation in Germany-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Investing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Studies on the investment process in Europe*, Springer, Heidelberg, 47-84.
- Hassett, K. A., and Hubbard, R. G. 2002. "Tax policy and business investment."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3, 1293-1343.
- Hassett, K. A. and Mathur, A. 2015. "A Spatial Model of Corporate Tax Incidence."

- Applied Economics, 47(13): 1350-1365.
- Harberger, A.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June 1962, pp.215~240.
- , "Corporation Tax Incidence: Reflections on What is Known, Unknown and Unknowable", at Is It Time for Fundamental Tax Reform: the Known, the Unknown and the Unknowable conference, 2006.
- JCT, 2017,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November 16, 20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 JCT, 2017,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1, the "Tax Cuts and Jobs Act", JCT December 18, 2017, JCX-76-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 Jost H. Heckemeyer and Michael Overesch, 2013, "Multinationals' Profit Response to Tax Differentials: Effect Size and Shifting Channels, Discussion Paper No. 13-045, Center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 Mott et al, "Global Tax Rate Makers", J.P. Morgan, North America Equity Research, 2011.
- Musgrave, Rucgard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 Hill, Inc., 1959.
- OECD, Tax Database Dataset: Corporate Income tax rate.
- , Revenue Statistics & National Account Data
- Philip S. Dittmer, "A Global Perspective on Territorial Taxation", TAX FOUNDATION Special Report No. 202, Aug. 10, 2012.
- Randolph, W. C., "International Burde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Working Paper 2006-09,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6.
- Southwood, B. "Who Pays Corporation Tax", Adam Smith Institute, 2014.
- Stiglitz, J.E., 1973,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No. 1, 1-34.
- Summer, 2017. "Hassett's flawed analysis of the Trump tax plan", CNBC, 2017.10.17.
- Tax Foundation. 2011. "Ten Reasons the U.S. Should Move to a Territorial System of Taxing Foreign Earnings."
- Tax Foundation. 2017. "The Jobs and Wage Effects of a Corporate Rate Cut."
- Tax foundation, 2017,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